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##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19년 01월 09일
- 회부일자: 2019년 01월 11일

### 3. 제안이유

- 2016. 7. 20일자 충청북도의회로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동의 의결 받은 「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사업」이 2018. 12. 31.자로 3회차 재계약 완료 되어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 제2항에 따라 4회차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-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 및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도내 청년창업의 체계적 육성·지원 기관인 베이스캠프 구축.

### 4. 주요내용

- 예비·초기 창업자 창업공간 제공 및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
-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“자문기구” 및 “협의회” 운영
- 시제품개발, 홍보 등을 위한 사업화지원금 지원

### 5. 검토의견

- 법적 근거 및 동의안의 내용
  - 2016. 7. 20일자 충청북도의회로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동의 의결 받은 청년 창업 베이스캠프사업은 「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」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수행기관인 (재) 충북산학

융합본부에 2016. 8월부터 2018. 12.월까지 3회에 걸쳐 재계약 민간위탁 하였고

<< 위탁현황 >>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차수	1기	2기	3기	4차협약(예정)
협약기간	'16.08.~'17.4	'17.05.~'17.12	'18.01.~'18.12	'19.01.~'21.12
사업비	도비 300	도비 300	도비 300	도비 300

- 4회차 민간위탁을 위해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조례」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적의 제출되었음

○ 종합의견

- 도내 우수아이템을 보유한 예비·초기 청년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는 청년창업 베이스캠프의 주요사무는 크게 ① 예비·초기 창업자 창업 공간 제공 및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, ②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“자문기구” 및 “협의회” 운영 ③ 시제품개발, 홍보 등을 위한 사업화지원금 지원 사업 등으로
- 청년들이 쉽게 창업에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
- 청년창업 관련 다양한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서 자율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창업교육과 제품개발 및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전문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
- 다만, 수탁자 선정시 업무수행 능력 이외에도 청년창업자에 대한 맞춤형 사후 관리능력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인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- 이와 함께 창업이라는 것은 절벽 위를 아슬아슬하게 외줄을 타고 올라가는 것과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도전이고, 창업에 도전해서 한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, 젊은이들에게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‘실패를 용인하는 사회’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적 안정망 구축도 함께 고려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

## 참고 1

##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민간위탁 성과보고 현황

### □ 총괄개요

○ 사업목적 : 충북도 특화산업과 관련된 우수 창업 아이템 보유자에 대한 체계적 육성·지원

○ 사업비 : 300백만원 (도비100%)

○ 사업기간

- 2016년 청년창업베이스캠프 (1기 / 2016.08.29. ~ 2017.05.28)
- 2017년 청년창업베이스캠프 (2기/2017.05.01. ~ 2017.12.31)
- 2018년 청년창업베이스캠프 (3기/2018.01.30. ~ 2018.12.31.)

○ 추진실적

- 창업공통교육 실시(창업가마인드, 창업절차, 마케팅 등)
- 멘토링 실시, 변리사 및 노무사 등 외부전문가 초빙 멘토링
- 예비 청년창업자 사업화 지원\*

\* `16년 25개팀 선정·지원/ `17년 30개팀 / `18년 32개팀

### □ 사업성과

구분	시제품제작	신규창업	신규고용	매출발생	타 기관 지원사업선정
2016	25건	5건	3팀(5명)	8팀(576백만원)	8팀(446백만원)
2017	30건	5건	6팀(19명)	8팀(575백만원)	11팀(505백만원)
2018	32건	8건	2팀(4명)	6팀(447백만원)	18팀(미정)

## □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(제5조, 제10조)

제5조(일자리 창출 사업)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여성, 노인, 장애인,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
2. 청년층 등 생산적·경제적 일자리 창출사업
3.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
4.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사무의 위탁) 도지사는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**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**

## 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(제4조, 제5조)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5. 그 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**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**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